



UBORA

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

근 린 생 활 시 설
입 점 안 내 문

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단지 내 상가 입점자 여러분께!

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가 고객님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24년 12월 30일(월)부터 단지 내 상가 입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순조롭고 원활한 입점을 위하여 입점 절차를 안내 하오니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단지 내 상가를 선택하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, 댁내 평안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년 11월

시행사 | (주) KT estate 대표이사
시공사 | (주) 반도건설 대표이사

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

○ 입점 지정기간 안내

- ① 2024년 12월 30일(월) ~ 2025년 02월 27일(목)
- ② 입점 지정기간 이전에는 입점하실 수 없으며, 잔금완납 후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입점증을 발급 받으신 후 입점 가능합니다.

○ 입점 세부절차 안내



1 분양대금 납부

▶ 분양대금 납부기간 : 현재 ~ 2025년 02월 27일(목)

구분	단지 내 상가	문의처
계좌번호	신한은행 100-035-839802	입주지원센터 ☎ 033) 766-9561
예금주	(주)케이티에스테이트	
입금자명	점포호수와 계약자 성명 기재 예) "101홍길동"	
안내사항	·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지정계좌에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. · 분양대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(2025. 02. 28)부터는 분양대금납부 시 공급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.	

2 입점증 발급

▶ 입점증 발급개시일 : 2024년 12월 27일(금)

발급시간	장소	비고
평일(월~금): 9시~16시 30분, 토·일: 9시~15시 30분	입주지원센터 (점심시간 :12시~13시)	
발급대상	분양대금(중도금 및 잔금)을 완납한 호실	
준비서류	계약자 신분증, 분양대금(잔금) 납부영수증 [대리인 방문 시:대리인 신분증,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, 위임용 인감증명서 지참]	
안내사항	· 입점증 발급은 가급적 평일에 잔금을 납부하신 후 입점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· 수도광열비(공용포함)를 비롯한 관리비는 입점일(열쇠 인수일)로부터 부과되며 입점지정기간 이후에 입점하는 세대는 입점기간 종료일 익일(2025. 02. 28)부터 수도광열비(공용포함)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입점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· 점포 내 인테리어 공사는 사용승인 확정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	

3 열쇠수령(시설물 인수인계) 및 입점

▶ 입점증을 발급받으신 세대에 한하여 열쇠가 불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· 열쇠 수령과 동시에 해당 점포에 대한 각종 계량기 검침 및 시설물 인수인계가 진행 됩니다.
(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계량기 명의 변경 : 당사→계약자 또는 입점자 처리)

· 열쇠 수령 이후에는 점포내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.

·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**최초 설치된 시설물 변경(인테리어) 또는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 할 경우,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**

▶ 각 점포의 시설 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(진열대, 냉난방 시설 및 간판 등)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.

▶ **간판난립으로 인한 미관상 문제, 본 건물 파손 및 하자발생, 관공서의 인허가 규제, 입점자간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간판의 종류, 규격 등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**

▶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,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과 관련하여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, 중복업종에 따른 폐단과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관리 운영회를 구성하여 상호 업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점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(영업허가, 용도변경 등)은 입점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

